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 |
|----------|-------|
| 의안 번호 | 2538번 |
|----------|-------|

2021년 9월 9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자 : 서울특별시장

나. 발의일자 : 2021년 8월 04일

다. 회부일자 : 2021년 8월 18일

라. 상정결과 : 제30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1년 9월 9일,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문화본부장 주용태)

가. 제안이유

- 박물관·미술관 진흥 중장기 계획(2019~2023)」(2019.6. 문화체육관광부)에 근거 서울시가 박물관 및 미술관과 관련하여 종합,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박물관·미술관 진흥계획 수립 여부 및 이행 현황 점검 사항들을 위해 조례에 세부사항을 명기하여 박물관, 미술관의 정책 기능 강화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제3조의2(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계획 수립))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경욱)

가. 개정안의 취지

- 동 개정조례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9조(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책 수립) 및 〈박물관·미술관 진흥 중장기 계획(2019~2023)〉(2019.6. 문화체육관광부)에 근거하여 박물관·미술관 진흥계획 수립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박물관·미술관 진흥계획 수립 여부 및 이행 현황, 점검 사항 등을 조례에 명기하여 박물관·미술관 정책의 종합적 접근을 강화하려는 것임.

나. 개정안의 내용

- 삶의 질 향상, 지역균형발전,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SOC)’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박물관 및 미술관의 운영과 설립에 관한 기존의 문제와 현황을 반영한 박물관·미술관 진흥정책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어 왔음.

문화체육관광부의 <박물관·미술관 진흥 중장기 계획(2019~2023)>은 △등록제도, 학예사 자격제도 등 주요 제도 개선 평가제도 정비, △특성화 지원 등을 통한 질적 제고 등의 운영 활성화, △미술관 까지 소장품 등록·관리시스템 구축 확대, 광역 공공수장고 건립 지원, △박물관·미술관 응용프로그램(App)을 통한 실시간 정보 제공, 안전하고 열린 환경 조성 △‘스마트 박물관·미술관’ 조성, 박물관·미술관 협력 활성화, △협력망 활성화로 박물관·미술관 연계, 지역문화관광거점 기능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동 개정조례안은 시장이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을 위한 “박물관·미술관 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서울시 박물관·미술관의 진흥을 위해 관련 제도 개선 및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9조(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책 수립)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공·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확충, 지역의 핵심 문화시설로서의 지원·육성, 학예사 양성 등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기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립 박물관과 국립 미술관을 설립·운영하는 중앙 행정기관의 장은 제1

항에 따른 기본 시책에 따라 소관 박물관과 미술관 진흥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 시책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현행 | 개정안 |
|------|--|
| <신설> | 제3조의2(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계획 수립)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 서울시는 2015년부터 ‘박물관·미술관 도시, 서울’ 프로젝트를 통해 다양한 주제를 담은 특색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 욕구를 채우기 위해 노력해왔음.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박물관과 미술관(박물관 133곳, 미술관 45곳)은 2015년에 비하여 28개소가 증가하였으며, 올해는 한양도성 유적 전시관과 종로구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이 개관 예정이며 2023년에는 서서울미술관과 서울사진미술관이, 2024년에는 풍납동 토성박물관이 각각 개관할 예정임.

〈서울시 박물관·미술관 현황〉

| 연도별 | 합계 | 박물관 | | | | 미술관 | | | |
|-------|-----|-----|-----|----|----|-----|-----|----|----|
| | | 계 | 국공립 | 사립 | 대학 | 계 | 국공립 | 사립 | 대학 |
| 2021년 | 179 | 133 | 35 | 70 | 28 | 45 | 6 | 34 | 5 |
| 2015년 | 151 | 116 | 26 | 66 | 24 | 35 | 3 | 28 | 4 |

〈문화본부 소관 박물관·미술관 현황〉

| 연번 | 박물관 | 개관일 | 연번 | 미술관 | 개관일 |
|----|-----------|---------|----|------------|--------|
| 1 | 돈의문박물관마을 | '17.9월 | 17 | 서울시립미술관 | '88년 |
| 2 | 서울우리소리박물관 | '19.11월 | 18 | 남서울미술관 | '04년 |
| 3 | 한성백제박물관 | '12.4월 | 19 | 북서울미술관 | '12년 |
| 4 | 서울역사박물관 | '02.5월 | 20 |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 '06년 |
| 5 | 경교장 | '13.3월 | 21 | SeMA 벙커 | '16년 |
| 6 | 백인제가옥 | '15.11월 | 22 | SeMA 창고 | '16년 |
| 7 | 돈의문전시관 | '18.4월 | 23 | 백남준기념관 | '17년 |
| 8 | 공평도시유적전시관 | '18.9월 | 24 | 세종미술관 1,2관 | '78년 |
| 9 | 경희궁 | - | 25 | 광화랑 | '05.2월 |
| 10 | 한양도성박물관 | '14.7월 | 26 | 세종·충무공이야기 | '09년 |
| 11 | 동대문역사관 | '09.10월 | 26 | DDP디자인뮤지엄 | '14.3월 |
| 12 | 동대문운동장기념관 | '09.10월 | / | | |
| 13 | 청계천박물관 | '06.1월 | | | |
| 14 | 서울생활사박물관 | '19.9월 | | | |
| 15 | 딜쿠샤 | '21.3월 | | | |
| 16 | 서울공예박물관 | '21.7월 | | | |

그동안 ‘박물관·미술관 도시, 서울’ 프로젝트는 정책적인 수준에서 종합적으로 다뤄지기 보다는 신규시설 건립에 치중하는 등의 시설 운영 수준에 머물러온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문화본부 소관 박물관·미술관 간의 차별적인 콘텐츠가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며 기본계획 수립부터 콘텐츠 수집 및 개발 등에 대한 거시적인 종합계획을 세워줄 것을 당부해왔음.

〈서울시문화시설(박물관 미술관)건립 추진현황〉

○ 2010년 이전

- 2천년 고도 서울의 역사문화 정체성 확립을 위해 '07.6월 한성백제박물관 건립 추진계획」 수립, '08.12월 착공하는 등 사업 본격추진
- 강남북 지역간 문화불균형 해소를 위해 '08. 9월 「시립미술관 강북분관 건립계획」 수립하여, 노원구 중계동에 사업부지 확정하여 '11.3월 착공

○ 2011~2015년

- 민선4기 본격 추진된 권역별 거점 시설 준공(한성백제박물관, 북서울미술관)
- 서울 곳곳에 특색있는 테마형 박물관·미술관 13개소 건립 계획 수립('15.)

○ 2016~2021년

- 향토민요, 공예문화 등 서울의 문화예술 자원을 활용한 테마 뮤지엄 개관
 - ▶ 서울우리소리박물관('19.), 서울생활사박물관('19.), 서울공예박물관('21.)
- 재개발 등으로 확보된 유휴 공간을 지역 문화자원과 연계한 소규모 시설 조성

○ 2024년 까지

- 시립미술아카이브, 사진미술관, 서서울미술관, 통합수장고 등 거점 시설 개관 예정

- 문화본부는 '박물관 미술관도시 서울' 정책위원회¹⁾를 운영하여 박물관·미술관 관련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려고 했으나 해당 위원회는 조례상의 상설 위원회가 아닌 자문위원회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박물관과 미술관에 대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발전 정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음.

라. 종합검토 의견

- 동 개정조례안은 시장이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을 위한 “박물관·미술관 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서울

1) 행정1부시장, 경제정책실장, 문화본부장, 평생교육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문화시설추진단장, 역사박물관장, 시립미술관장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

시 박물관·미술관의 중장기적인 진흥정책을 마련하고 지역공동체에 사회·문화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임.

동 개정조례안 규정을 계기로 박물관·미술관 중장기 진흥계획 수립하고 박물관·미술관의 새로운 방향성 정립과 시설·조직·기능·역할 등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출석위원 전원 찬성)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 |
|--------|--------------|
| 담당 조사관 | 연락처 |
| 노재윤 | 02-2180-8118 |

의안번호
2538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 의 | 제 안 자 | 제안일자 | 소관 상임위 | | |
|-----------------------|---|----------|-----------------|----|-----------------|
| | 오한아 | 2021.8.4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 |
| 주요내용 | <p>○ 제안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물관·미술관 진흥 중장기 계획(2019~2023)」(2019.6. 문화체육관광부)에 근거 서울시가 박물관 및 미술관과 관련하여 종합,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박물관·미술관 진흥계획 수립 여부 및 이행 현황 점검 사항들을 위해 조례에 세부사항을 명기하여 박물관, 미술관의 정책 기능 강화하고자 함. <p>○ 주요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제3조의2) | | | | |
| 추진경과 | ○ 2021.8.4. 조례 일부 개정안 발의(오한아 의원 외 11명) | | | | |
| 부 서 검토의견 | 원안가결(○) / 수정가결 () / 부결() / 보류() | | | | |
| 쟁점사항 (의회동향, 문제점 등) | ○ 조례에 진흥계획 수립·시행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상위법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개정취지에 공감하며, 개정안에 동의함 | | | | |
| 대응방안 | ○ 별도 대응내용 없음(부서의견 사전수렴) | | | | |
| 상 임 위 처리결과 | | | | | |
| 향후계획 | ○ '21.9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및 조례 시행 | | | | |
| 담당부서 | 박물관과 | 팀장 | 김득삼(☎2133-4183) | 담당 | 조서영(☎2133-4185) |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한아 의원 발의)

| | |
|----------|------|
| 의안 번호 | 2538 |
|----------|------|

발 의 년 월 일 : 2021년 08월 04일
발 의 자 : 오한아 의원(1명)
찬 성 자 : 경만선, 김소영, 김춘례,
김태호, 노승재, 문병훈,
신원철, 안광석, 유 용,
최영주, 황규복 의원(11
명)

1. 제안이유

- 「박물관·미술관 진흥 중장기 계획(2019~2023)」(2019.6. 문화체육관광부)에 근거 서울시가 박물관 및 미술관과 관련하여 종합,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박물관·미술관 진흥계획 수립 여부 및 이행 현황 점검 사항들을 위해 조례에 세부사항을 명기하여 박물관, 미술관의 정책 기능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제3조의2(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계획 수립))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기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계획 수립)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u><신 설></u> | <u>제3조의2(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계획 수립)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 |